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2. 23	3. / (총 27	· 총 27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양 정 석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송 은 철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전 화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병원·시설 대응팀	팀 장 담 당 자	민 영 신 윤 동 빈 유 정 현 김 욱		044-202-3530 044-202-2474 044-202-3517 044-202-3864		
공정거래위원회	과 장	신 동 열		044-200-4405		
소비자정책과	담 당 자	김 현 우		044-200-4411		
경찰청	센 터 장	김 용 종		02-3150-2062		
위기관리센터	담 당 자	이 용 상		02-3150-296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요양병원 등 확진자 급증 원인 분석 및 방역 강화대책,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세부추진계획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 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세부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전국적으로는 내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이 시행된다고 언급하였다.
 -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국민들께 알려드린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에게 국민들께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잘 **실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알려주길 당부하였다.
- □ 정 본부장은 최근에도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입소자 특성상 기저질환자나고 평자가 많아 이분들이 확진되면 위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위험하다고 언급하였다.
 -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제적 진단검사의 효과가 확인 되고 있는 만큼, 이를 요양병원·시설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진단검사(PCR) 외에 신속 항원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충북 사례처럼, 다른 지자체도 선제적 검사 차원에서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수시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확진자 발생 및 대응 현황

- □ 12월 23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7.~12.2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90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86.3명이다.
 -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 754명
 - 여전히 **수도권 환자가 71%**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7.~12.23.)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02.9명	67.6명	36명	56명	76.9명	23.9명	23.1명
60대 이상	219.3명	28.7명	17명	15.1명	24명	5.9명	8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 (12.22. 9시 기준)	12개	1개	2개	1개	6개	9개	10개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환자를 신속히 찾아** 내고 추가**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어제(12.22.)도 **107,218건을 검사**하는 등 연일 10만 건 이상의 대규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환자로 신고된 54,14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검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수도권에 설치된 142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어제 5만 명 넘게 검사(53,077명)를 받았으며, 그간 총 292,583건을 검사하여 754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 서울 58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0개소











□ 그간의 병상 확충과 병상 운영 효율화에 따라, 오늘(12.23.) 0시 기준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도 18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 >

구분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일 이상 대기자(명)	422	454	595	496	548	368	354	248	183

- 수도권 환자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내의 입원대상 환자를** 신속히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타 시·도 병상으로 이송하고 있다.
- 또한,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한 고령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조치하는 등 병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병상, 인력 등 의료대응 역량도 계속 강화해 가고 있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후 생활치료 센터는 26개소 6,792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18개소 1,220병상, (준)중환자 병상은 24개소 130병상을 확충하였다.
 - 중환자병상은 전국 42병상, 수도권 12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18일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허가 병상 수의 1%를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 이에 따라 오늘(12.23.)까지 104병상을 지정하고, 12월 26일에는 199병상, 연말에는 328병상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0개소 10,848병상을 확보(12.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7.7%로 5,60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 400여 명 규모로 개소하였다.
 - 또한,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위해 고령 환자라 하더라도 만성기 저질환이 없거나 산소포화도 90미만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로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12.18.)하였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5,568병상을 확보**(12.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5%로 **1,39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에 더해, 약 4백여 개의 대규모 병상을 추가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춘 민간 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총 14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운영비와 시설· 장비비, 인건비 등을 선(先)지원 받게 된다.
- □ 와상·치매 환자, 신장질환자, 응급 환자 등의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요양병원에서 확진되거나, 자택 대기 중인 고령의 와상·치매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는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는 권역·중증 응급센터에서 격리실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수용하고, 자택 대기 중인 확진자가 증상 악화 시 긴급병상을 배정하거나, 권역·중증 응급센터 또는 예비병상에서 수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세부 추진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로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12월 21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검사한다.
 - *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 종사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종사자 관리 모범사례 (요양병원)를 배포하고, 병원·시설별 방역책임자가 방역관리 강화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직원들의 사적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방역관리 강화내용

- 행정명령(종사자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철저 이행, 종사자 동선 관리
- 병동별·층별 근무 분리, 휴게실 등 공용공간 분리 운영 등
- * 가족 등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와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고지하고 근무배제 후 검사 실시 등











-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종사자 관리, 진단검사 이행 여부** 등을 **전수점검**(12.28.~12.31.) 할 예정이다.
 - 요양시설은 지난 11월 9일부터 진행 중인 동절기 안전점검에 시설 내 감염병 관리항목을 포함하여 방역실태 조사 중이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요양시설 일일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설별 중사자 발열여부, 확진자 현황** 등을 면밀하게 관리 중이며,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과 유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1개 관광** 숙박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위료하였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12.22.)에 따라 호텔협회·관광협회· 콘도협회, 주요 숙박 예약 사이트 등 관광숙박시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예약 제한(50%)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요청하고
 - 숙박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 리플렛을 배포**하고, 예매율 준수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로 위약금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기존에 마련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11.13. 개정) : 집합금지에 따른 취소 시 위약금 면제(연회 시설운영업) 및 객실 50% 제한으로 예약 불가 시 위약금 면제(숙박시설)











- 어제(12.22.) 공정위·소비자종합지원포탈·중수본·소비자원, SNS 등에 분쟁 해결기준을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를 게재하였다.
- 이와 함께 지자체, 소비자단체(1372 소비자상담전화 운영)에 감면 기준을 숙지시키는 한편,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기준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연말·연시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식당·카페, 종 교·요양 시설 등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소 관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이다.
 - 고위험시설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가용 경력을 동원하여 방역수칙 점검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 관련 신고는 지자체 통보 후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 채중·계도 등의 조치를 한다.
 -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의 방역을 위해 가용경력·장비를 지원하고, 진입로에 경력 등을 사전에 배치하여 교통통제와 주변 주정차 위반 단속 등을 통해 다수가 모이지 못하도록 예방한다.











- 외국인·탈북민·다문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사적 모임을 점검하는 등 외국인· 탈북민 대상 방역활동도 강화한다.
-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하여 고소·고발 접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 △공무집행방해, △시민 불안을 일으키는 폭력행위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특히, 흥기·중대피해 등은 구속수사를 워칙으로 할 예정이다.
 -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제한 통고하고, 만일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해산 조치한다.
- 사회 불신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차단**하고, 악의·조직적 행위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할 계획이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확진에 대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중증 장애인 확진 시 코로나19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인력 풀을 확보**하고, 24시간 돌봄 유지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확대(최대 2주간, 5백만 원)한다.











- 돌봄인력의 안전을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3,032병상, 병원에 793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병상 3개소 82병상, 생활치료센터 2개소 436병상 등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12만여 건을 검사**하였다. 도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임시선별검사소 위치를 알리고, 도민의 적극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한편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치소에 도(道) 인력을 파견하고 수형자,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이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22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42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89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652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18명 증가하였다.











- 어제(12.2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 중이다.
- □ 12월 22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2035개소, ▲실내체육시설 3,572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7063개소를 점 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3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9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84개반, 83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 붙임 >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 2.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사항
 - 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5.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현황
 - 6. 감염병 보도준칙
-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평 생 친 구

붙임1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구분	현재 비수도권 조치 (2단계)	현재 수도권 조치 (2.5단계)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1.3)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u>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u>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식당	▶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덕 50㎡ 이상)	▶ <u>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u>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u>좌석 두 칸 띄우기</u> ▶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겨울 스포츠시설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u>집합금지</u>
숙박시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기타	-	-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붙임2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사항

1. 개요

- (방향성)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
 - ①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 ② (모임·파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 ③ (관광·여행)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 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등
- (기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목) 0시 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
 -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 (지역)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2. 방역 강화 방안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

- **(요양·정신병원 등)**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외부 접촉 최소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 (선제검사)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2회 검사 추진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 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이외 취약시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 철저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붙임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 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 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² 이상) ▶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 (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 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 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 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HF = 12 FUI =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포네인 <u>급</u> 영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스탠딩공연장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괸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 인원 30% 이내로 제한
 -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 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 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 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5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12.22.기준)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광역(0개)	-	-	-	-	-	-	-
1.5단계	기초(8개)	-	-	1개 (무주)	-	-	7개 (태백시 등 7개 시군)	-
	광역(12개)	-	4개 (세종,대전,충 북, 충남)	3개 (광주 전북 전남)	2개 (대구,경북)	2개 (울산 경남)	-	1개 (제주)
2단계	기초(10개)	-	-	-	-	-	10개 (춘천시 등 10개 시군)	-
2 5 12-7)	광역(4개)	3개 (서울 인천 경기)	-	-	-	17ዘ (부산)	-	-
2.5단계	기초(5개)	_	17개 (당진)	1개 (김제)	-	1개 (거제시)	1개 (동해시)	-

	지	역	단계조정내용				
구분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 단계		
1		서울	12.8.~12.28.	서울 전지역	2.5(↑)		
2	수도권	경기	12.8.~12.28.	경기 전지역	2.5(↑)		
3		인천	12.8.~12.28.	인천 전지역	2.5(↑)		
4		세종	12.8.~12.28.	세종 전지역	2(↑)		
5		대전	12.8.~12.28.	대전 전지역	2(↑)		
6	충청권	충북	12.9.~12.28.	충북 전지역	2(↑)		
7		충남	12.15.~별도명령시	충남 일부지역	2(↑)		
/			12.15.~12.28.	당진시	2.5(↑)		
8		광주	12.7.~12.28.	광주 전지역	2(↑)		
			12.8.~12.28.	전북 일부지역	2(↑)		
9	호남권	호남권 전북	12.8.~별도명령시	무주군	1.5(-)		
			12.15~1.3	김제시	2.5(↑)		
10		전남	12.8.~12.28.	전남 전지역	2(↑)		
11	경북권	대구	12.8.~12.28.	대구 전지역	2(↑)		
12	성독년	경북	12.8.~12.28.	경북 전지역	2(↑)		
13		부산	12.15.~12.28.	부산 전지역	2.5(↑)		
14	경남권	울산	12.8.~12.28.	울산 전지역	2(↑)		
15	() 다년	경남	12.8.~12.28.	경남 일부지역	2(↑)		
15		7 <u>-</u>	12.21.~12.28.	거제시	2.5(↑)		
			12.20.~별도명령시	동해시	2.5(↑)		
16	강원	강원	12.15.~별도명령시	춘천, 원주, 영월, 삼척 _{(12.20.~),} 정선 철원, 강릉·평창 _{(12.18.~),} 횡성·홍천 _(12.23.~)	2(↑)		
			12.15.~별도명령시	태백,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속초 _(12.21.~)	1.5(-)		
17	제주	제주	12.18.~1.3.	제주 전지역	2(↑)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1~2.5)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붙임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워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첚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